

존중과 참여로 인권우호적인 학교문화 조성

0

2015. 12.



2015 중등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결과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학생인권교육센터]

2015 중등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계획



I 목적

- 전라북도 중·고등학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전수 조사하여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 실시
- 전라북도 각급 학교생활규정 중 우수사례를 발굴·보급하여 인권우호적인 학교 문화 조성에 기여
- 학교생활규정 컨설팅을 통해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주체적이고 행복한 삶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II 관련 근거

1. 「교육기본법」

-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사회교육시설을 지도·감독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教授)·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② 학칙의 기재 사항과 제정·개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학생의 인권보장)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 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조(장학지도) 교육감은 법 제7조에 따라 장학지도를 하는 경우 매 학년도 장학지도의 대상·절차·항목·방법 및 결과처리 등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장학지도 대상학교에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①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6. (생략)

7. 학생 포상, 징계, 징계 외의 지도방법, 두발·복장 등 용모, 교육목적상 필요한 소지품 검사,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의 사용 및 학교 내 교육·연구 활동 보호와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 등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사항

8.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9. 학칙개정절차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4.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7조(규정개정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 대표로 구성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5.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교육부 학생복지자치과 - 2876, 2014.5.15.)

- 임신·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칙* 개정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문란 시 퇴학 가능, 이성 교제로 인해 학교의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이성 간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 가능 등)
- 시·도교육청은 학교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청 단위 '학교 규칙 컨설팅'을 통한 점검 병행 실시

III 세부추진계획

1. 컨설팅 과정

컨설턴트 사전 협의회(2015. 7. 7.)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계획 수립(2015. 8. 17.)



학교생활규정 수집을 위한 공문 발송 및 수집(8. 16. ~ 8. 28.)



컨설턴트 협의 및 체크리스트 확정(2015. 8. 27.)



학교생활규정 분석(2015. 9. ~ 10.)



컨설팅 보고서 작성(2015. 10. 28.)



컨설팅 보고서 결과 분석 및 향후 계획 수립(2015. 10. 30.)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결과 보고 연수 (2015. 11. 13. , 11. 15.)



학생인권심의위원회 심의 (2015. 11. 26.)

2. 컨설팅 대상 학교 수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수	209	133	342

3. 컨설팅 내용

- 가.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학생의 인권’ 준수 여부
- 나.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방향, 절차에 대한 지침 준수 여부

4. 단위학교 학교생활규정 수집

- 가. 공문발송 : 2015. 8. 18. (화)
- 나. 학교생활규정 제출(공문 발송)

학교급	중학교	고등학교
제출기간	2015. 8. 19. (수) ~ 8. 26. (수)	2015. 8. 18. (수) ~ 8. 26. (수)
제출처	지역교육지원청	전라북도교육청 인성건강과
제출방법	전자문서	전자문서

다. 지역교육지원청 취합 제출 : 2015. 8. 28.(금)

5. 컨설팅 기간

: 2015. 9. 1. (화) ~ 2015. 10. 29. (목)

6. 결과보고

가. 지역교육지원청 인성인권담당 장학사 회의시 컨설팅 안내(2015. 9. 4. 금)

나. 학교생활규정 분석 후 컨설턴트 결과 보고 협의

(2015. 10. 15. 금 학생인권교육 센터)

다. 결과보고서 안내(2015. 11.)

- 전라북도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human.jbe.go.kr>)

민주시민/학교생활규정 자료실 자료 탑재 및 활용

※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 연수(2015. 11월 중, 대상 : 초·중등 교감 및 인권담당 교사) 및 2015 인권교육 강사단 평가회시 안내 (2015. 12. 17.)

라. 학교 컨설팅

- 학교생활규정 컨설팅 요청 학교 대상 컨설팅

- 컨설팅 실시 : 2016. 상반기

7. 컨설턴트 명단

순	이름	소속	직위
1	이창수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장학사
2	정지현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장학사
3	오동선	이리백제초등학교	교사
4	양희전	전주우림중학교(법과대학원 파견)	교사
5	정옥진	회현중학교	교사
6	김석	전주공업고등학교	교사
7	강현준	전주여자고등학교(법과대학원 파견)	교사
8	진경민	전북인권교육센터	사무국장
9	김미현	전북인권교육센터	교육팀장
10	최미나	군산청소년자치연구소	연구원

IV

중등 학교생활규정 체크리스트

영역	살펴 볼 내용
개정일 및 규정 공개	1. 학교생활규정 개정일이 언제인가? 2. 학교생활규정이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되어 있는가?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여부	1.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
체벌과 교육적 조치	1.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가?
방과 후 학습 선택권 부여	1. 방과 후 학습, 심야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선택권이 부여되는 규정이 있는가?
용의복장	1. 학생에 복장, 여학생의 경우 치마, 바지 선택권 부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가? 2.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의 제한규정이 있는가? 3. 교복 착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가? 4. 양말, 스타킹, 신발, 외투, 액세서리, 화장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사생활의 자유	1. 수업도중 휴대폰을 압수하여 장기 보관하는 규정이 있는가?
	2. 학생의 휴대전화기, 전자기기를 걷는 규정이 있는가?
	3. 학생의 동의하에 소지품을 검사하는 규정이 있는가?
양심·종교의 자유	1. 학생에게 대체과목 없이 특정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규정이 있는가?
	2.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는 규정이 있는가?
학생자치활동	1. 학생회 임원 입후보시, 징계여부, 성적, 학년, 품행에 따라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는가?
	2. 학생투표가 아닌 교사 등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추천한다(학생의 추천 20명 이상)는 규정이 있는가?
	3. 학급 임원 및 학생회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징계를 받을 시에 자격이 박탈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양성평등	1. 생리공결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가?
표현의 자유	1.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가?
	2. 학교 게시판(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사용할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통제를 받는 규정이 있는가?
노동권 인정	1.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교사들의 허가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가?
징계, 상벌 규정	1. 상벌점제(그린 마일리지 제)를 시행하고 있는가?
	2. 징계사유에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가?
	3. 징계와 상벌 절차에서의 문제가 있는가?
	4.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규정이 있는가?
	5. 상벌점 제도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이 있는가?
	6. 징계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이 있는가?

중등 학교생활규정 체크리스트별 결과 분석



1 학교생활규정 개정일 및 공개

순	살펴 볼 내용
1	학교생활규정 개정일이 언제 인가?

★ 분석 결과

학교 급	학교 수	2015년	2014년	2013이전	미기재(기타)
중학교	209	39(19%)	107(51%)	24(11%)	39(20%)
고등학교	133	34(26%)	64(48%)	10(8%)	25(18%)

★ 실태

- 2015학년도에 규정을 개정한 학교가 중학교 18%, 고등학교 26%임
- 대부분의 학교가 도교육청에서 개정 완료(인성건강과-25303, 2013. 9. 12.) 제시한 2014년 4월 30일을 기준으로 개정함

★ 의견

- 신입생이 입학하거나 학생회가 활동하는 학년 초(3월 ~ 4월)에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음
- 2013년 이후에 개정을 하지 않은 경우 있어 개별적인 안내가 필요함
- 학교 구성원들이 인권적이고 민주적인 학교생활규정에 대해 충분히 고민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필요함(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사전 의견 수렴 계획이 필요)
(예, 학생- 학생자치활동 시간, 교사 - 연수, 학부모 - 학교교육과정 설명회 등)

순	살펴 볼 내용
2	학교생활규정이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개되어 있는가?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9조 (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 분석 결과

학교급	전체학교 수	공개한 학교 수	미공개 학교 수
중학교	209	107(51%)	102(49%)
고등학교	133	43(32%)	90(68%)

★ 실태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에 제시되어 있음에도 공개한 학교 수가 현저하게 적음
- 별도의 메뉴를 만들어 조례 전체의 내용을 한 화면에 보여주는 학교도 있음

★ 의견

- 최근에 개정한 학교생활규정을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반드시 탑재하도록 함
- 학교구성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함(로그인하지 않고도 볼 수 있도록)
- 학교생활규정 개정과 관련하여 의견 게시 방법(학생회, 학부모 연수, 교무회의 의결 등)에 대한 안내가 필요함
- 의견 수렴 결과를 공개해야 함

2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여부

순	살펴 볼 내용
1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규정개정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가?(학생위원 40%이상)

★ 관련 근거

「초·중등 교육법」 제9조 제4항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학칙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47조 (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① 학교는 이 조례에 합치하도록 학교생활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규정개정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 ② 규정개정심의위원회는 교직원, 보호자, 학생대표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포함할 수 있다.
- ③ 교육감은 규정개정의 방향, 절차,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다.

★ 분석 결과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구성 학교 수	구성하지 않은 학교 수
중학교	209	82(39%)	127(61%)
고등학교	133	37(28%)	96(72%)

★ 실태

-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이 없는 학교가 중학교 62% 고등학교 96%임
-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개정하는 경우와 선도위원회 심의를 받는 경유가 있음
- 위원만 있으나 학생이 참여하지 않은 경우가 있음
- 학생과 학부모가 과반수이상 조항이 있는 학교가 있음
- 학생회에 불리하게 한 규정이 있음(학생 1/3 제한)
- 교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 '위원장은 교장으로 한다'라는 규정이 있음

★ 의견

- 지침에 따른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이 되어야 함(학생위원 40% 이상)
- 교사, 학생, 학부모의 비율과 수를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함
- 학교생활규정 개정 할 때 실제 학생회의 의견수렴이 되고 있는지 추후 실태조사가 필요하고 권고하는 활동이 필요함
- 학생 위원의 경우 학생회에서 자주적·민주적으로 선출하고 활동해야 함
- 교감이 없는 학교는 교무담당 교사로 위원장을 대행해야 함

※ 학교생활규정 제·개정 절차



*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구 성	역 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의 위원회는 학생, 학부모, 교원 대표로 구성하며, 인권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심의 위원회는 학교의 규모에 따라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학생, 학부모, 교원대표로 구성하며 (인권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포함 가능), 학생의 비율은 40%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의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한다.• 심의 위원의 임기는 학년도를 기준으로 삼아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 ·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규정안 검토, 의견수렴(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규정안 확정•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 및 홍보• 기타 학교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하여 결정• 학교 구성원의 학적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 예시

제○○조 (규정개정심의위원회 구성)

- ① 본교의 학교생활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둈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인 이상 12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장, 간사(생활지도 업무 담당자),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선출으로 선출한다. 학생위원은 전체의 4/1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해야 한다.
- 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 ④ 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⑤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조 (개정안의 발의)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회의 의결서 첨부)
 5.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한 학교장 발의
- ② 단, 제1항에 따른 발의 시기는 학생의 학습활동 등을 고려하여 학년 초로 하되, 관련 법령, 지침 등의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〇〇조 (문현조사 및 의견수렴)

- ① 위원회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적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의견수렴을 위하여 설문조사, 토론회, 공청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문현조사 및 의견수렴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〇〇조 (심의 및 결정)

- ① 위원회는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〇〇조(연수 및 교육) 개정된 학교생활규정에 대해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하고,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으로 개정 사실을 안내한다.

3 체벌 및 훈육

순	살펴 볼 내용
1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가?

★ 관련 근거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12조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갖는다.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⑧ 학교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본문에 따라 지도를 할 때에는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육·훈계 등의 방법으로 하되, 도구, 신체 등을 이용하여 학생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3.1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内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아동복지법」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3.27. 시행 2015. 9. 28>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9조(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② 학교교육과정에서 체벌은 금지된다.

★ 분석결과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138(66%)	71(34%)
고등학교	133	62(47%)	71(53%)

★ 실태

- 체벌 금지 조항이 없는 학교가 많으며 학생과의 동의하에 가벼운 체벌을 허용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가 있음
- 체벌 대신 학부모동반 프로그램이나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학교 등이 있음
- 체벌을 금지한다는 조항만 있고, 대안 제시가 없는 경우가 있음
- 체벌 금지 규정은 선언적 의미이고 대체 내용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의견

- 체벌 금지 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함
- 체벌 대신 긍정적인 훈육에 대한 제시가 필요
-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은 체벌이 안고 있는 위험성을 각인하고, 학생과 교사가, 학생과 학생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면서 체벌 없는 학교 문화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야 함
- 언어적 폭력이 학교에서 많이 이루어지므로 폭력의 유형임을 안내를 해야 함
- 학교에서 학생체벌에 대한 구제조치를 할 수 있는 창구 마련, 학생의 권리 구제 방법(조례 내용)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신설하여 제시했으면 함
- 체벌과 관련한 대안 모색으로 연수 및 워크숍, 컨설팅, 토론회를 통해서 지속적인 안내가 필요함

★ 예시

제○○조(체벌금지) 학생들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거나 정신적 모욕감과 수치심을 주는 언어폭력을 포함한 일체의 행위는 금지된다. 특히 금지해야 할 체벌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흔히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체벌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도구에 의한 체벌
2. 손이나 발 등 신체에 의한 체벌
3. 반복적·지속적 신체 고통을 유발하는 기합 형태의 체벌
4. 학생끼리 체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5. 학생들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 등을 유발시키는 언어적 폭력

제〇〇조(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 ① 교사는 학생과의 상담을 통해 문제행동의 원인을 우선 파악한다.
- ② 교사는 학생의 행동 성찰 및 수정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훈계·훈육의 교육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내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4. 적정한 수준의 방과 후 지도
 5. 훼손 시설·물품, 오염 등에 관한 원상복구
 6. 학부모 통보 및 상담
 7. 기타 학교생활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 ③ 교사가 상담 및 교육적 조치를 반복해도 학생이 행동 수정의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면 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4 방과 후 학습 선택권 부여

순	살펴 볼 내용
1	방과 후 학습, 심야 자율학습에 대한 학생선택권이 부여되는 규정이 있는가?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6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야간자율학습, 보충수업 등 종례 이후 실시되는 정규교과 이외 교육 활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정규교과 이외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분석 결과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19(9%)	190(91%)
고등학교	133	11(8%)	122(92%)

★ 실태

- 전체적으로 학생의 방과 후 학습에 관한 선택권이 규정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중학교 9%

고등학교 8%임

★ 의견

-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 과목 선택권에 해당되며, 없으면 규정 제정이 필요함
- 실제로도 방과 후 학습에 관한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학생들의 자율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규정에 삽입해야 함
- 방과 후 학습의 참여에 대해 벌점 부과 등의 규제를 하는 것은 삭제되어야 함.

★ 예시

제○○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의 자유)

- ① 학생은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을 자유롭게 선택하여 학습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는 학생에게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을 강요하지 아니하며,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③ 방과 후 학교 등 정규교과 이외의 교육활동에서 학생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용함으로써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보장한다.

5 응의 복장

순	살펴 볼 내용
1	학생에 복장, 여학생의 경우 치마, 바지 선택권 부여에 대한 제한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제한 규정이 있는 학교수	제한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59(28%)	150(72%)
고등학교	133	46(35%)	87(65%)

순	살펴 볼 내용
2	두발의 길이, 모양, 색상의 제한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95(45%)	114(55%)
고등학교	133	74(56%)	59(44%)

순	살펴 볼 내용
3	교복 착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명시한 학교 수	미명시한 학교 수
중학교	209	63(30%)	146(70%)
고등학교	133	49(37%)	84(63%)

순	살펴 볼 내용
4	양말, 스타킹, 신발, 외투, 액세서리, 화장 등에 대한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101(48%)	108(52%)
고등학교	133	59(44%)	74(56%)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2조 (개성을 실현할 권리)

- ① 학생은 복장, 두발의 길이.모양.색상 등 용모에서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 ② 교복을 입는 학교의 여학생은 치마와 바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다.
- ③ 학교의 장은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19조 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제1항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 실태

- 교복 착용 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학교가 있음
- 두발 길이 제한 없다면서, 두발상태를 수시로 검사함
- 두발 길이 제한, 변형 금지
- 티, 양말, 신발, 외투, 가방 등 금지규정 일색
- 학생다움이라는 모호한 규정과 두발변형 금지
- 화장, 액세서리 착용 금지인 학교들이 있음
- 특정 항목이 포함되어 규정이 있는 학교로 포함이 된 경우가 많음

★ 의견

- 학생들에게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자기 몸과 삶의 주체가 되는 자유화의 관점에서 인권교육이 필요함
- 학생들의 자기 결정권을 충분히 보장하도록 하되, 일률적인 규정보다는 제한은 극히 한정적으로 해야 함
- 용모에 대한 규정- 제한 두기가 어려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어렵지만 가급적 학생들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쪽으로 권고, 건강이나 교육적 차원의 지도가 필요함

- 학년별로 별도의 규정을 두는 것은 차별 규정이 될 수 있음
- 고정식 명찰은 학생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학생정보 인권을 침해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국가인권위 권고)
- 민주적인 의견 수렴절차와 규정개정심의위원회를 통한 인권보장 절차가 필요함

* 2015년도 중·고등학교 명찰 폐용 실태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중·고등학교 명찰폐용 방법 현황 조사(국회의원 요구자료) 관련 공문
(인성건강과-22750, 2015.08.28.)

학교 급	학교수	조사 참여 학교 수	고정식 명찰		탈 부착식		명찰 없음	
			학교 수	백분율(%)	학교 수	백분율(%)	학교수	백분율(%)
중학교	209	193	63	33	44	23	86	44
고등학교	133	119	34	28	50	43	35	29
총계	342	312	97	31	94	30	121	39

- 고정형 명찰 : 명찰이 교복에 박음질로 부착되어 있는 경우

예외) 명찰이 교복에 박음질 되어 있으나 주머니 안으로 집어 넣어 보이지 않는 경우는 탈부착 형으로 간주

★ 예시

제○○조 (용모)

- ① 복장, 두발의 길이 - 모양 - 색상 등 용모에 관한 사항은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 ② 타인을 비하·조롱하거나 인권을 침해할 만한 문구, 상징 등이 포함된 복장과 장식물을 착용하지 않는다.

6 사생활의 자유

순	살펴 볼 내용
1	징계로 휴대폰을 압수하여 보관하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80(38%)	129(62%)
고등학교	133	55(41%)	78(59%)

순	살펴 볼 내용
2	학생의 휴대전화기, 전자기기 소지 자체를 금지하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71(34%)	138(66%)
고등학교	133	19(14%)	114(86%)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 ④ 학교의 장은 학생의 휴대전화기,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 자체를 금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수업방해의 방지 등 교육목적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이 조례 제 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학생의 휴대전화기 사용과 그 밖에 전자기기의 소지를 규제할 수 있다.

★ 실태

- 압수 후 휴대폰을 한 달 이상 보관하는 학교가 있음
- 아침에 제출하여 종례 시 돌려주는 경우가 많음
- 일괄 제출하되 필요한 경우 교사의 허가 하에 사용하는 경우가 많음
- ‘분실 시 책임지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가 있음
- 보관의 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학교가 있음

★ 의견

- 개인의 사적 소유물에 대한 자유 보장을 원칙으로 함
- 학교생활규정으로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더라도, 학생의 사생활 및 소유권을 존중하고, 안전한 귀가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당해 수업이 종료 시 즉시 본인에게 돌려주는 것 바람직함
- 교사가 휴대전화 분실에 대한 위험부담을 지는 일괄수거 및 압수의 방법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고 교사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의미에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 제한과 강제보다는 학생에게 휴대전화와 전자기기의 건전한 사용예절을 지속적으로 교육하여, 학생 스스로 시간과 장소에 따라 이의 사용을 자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 더 바람직함

* 휴대폰 보관 후 분실 시 학교에서는 우선 분실신고를 한 뒤, 학교 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학교안전공제중앙회에 신청하면 되고, 학교안전공제중앙회는 접수받은 후 이를 심사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적정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교육부)

학교 관리 중 분실된 휴대폰 등 보상 지침계획 안내(인성건강과-35456, 2013.12.17.)

※ 일부 학교에서 학교규칙에서 학생들의 학교 내 전자기기 사용과 관련한 벌칙으로 전자기기를 학교가 상당 기일 동안 일시 수거하는 사례가 있음. 방과 후에도 학생들이 전자기기를 휴대하지 못해 안전과 관련된 긴급 상황 시 구조 요청 등을 할 수 없는 등 안전이 우려됨.

학교규칙 운영 및 제·개정 운영 안내(교육부 학생복지정책과-2919, 2014.5.19.)

★ 예시

제○○조 (전자기기 사용)

- ① 교육활동 과정(조·종례 시간, 수업, 청소활동, 학교행사, 체험활동)에서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작동시키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해 교사가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자기기를 작동시키거나 사용한 학생에 대해 전자기기 제출을 교사가 요구할 경우 학생은 그 요구에 응한다.
- ③ 휴대폰을 사용할 때에는 타인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통화예절을 지킨다.
- ④ 시험기간 중 휴대폰은 등교 시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보관하며, 시험 중 휴대폰을 소지하거나 사용할 경우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순	살펴 볼 내용
3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검사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49(23%)	160(77%)
고등학교	133	7(5%)	126(95%)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3조 (사생활의 자유)

제13조(사생활의 자유) ① 학생은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하는 등 사생활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해서는 아니 된다. 소지품의 검사 또는 압수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며,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 실태

- 사생활의 자유를 보장하는 규정이 있는 학교가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사생활 자유 보장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어 바람직함
- 중학교와 고등학교 간에 큰 편차를 보임

★ 의견

- 소지품 검사 관련 규정 개정 및 삽입이 필요함
-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에 한하여 학생의 동의하에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고, 동성의 교사가 실시해야한다는 규정 등이 필요함
- 학생(선도부 등)에 의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예시

제○○조 (소지 및 사용이 불가한 물품) 학생 개인 및 학교, 학교구성원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소지하거나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일부 물품의 경우 특별한 교육활동을 위해 학교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조 (소지품 검사)

- ① 학생과 교직원의 생명과 신체에 직접적 위험을 발생시키고, 학교의 안전을 위협하는 물건을 학생이 소지하여 사용 가능성이 현저할 경우 해당 학생의 소지품을 검사할 수 있다.
- ② 소지품 검사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일괄적이고 주기적으로 실시해서는 안 된다.
- ③ 소지품 검사 시에는 학생의 동의를 얻고, 다른 교원 입회하에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가능한 한 간결하고 신속하게 실시한다.
- ④ 신체 내 휴대가 의심되는 소지품에 대한 검사는 여학생은 여교사, 남학생은 남교사가 실시한다.

7 양심·종교의 자유

순	살펴 볼 내용
1	학생에게 대체과목 없이 특정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13	0	209(100%)
고등학교	133	0	133(100%)

순	살펴 볼 내용
2	학생의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21(10%)	187(90%)
고등학교	133	17(13%)	116(87%)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6조(양심·종교의 자유)

- ① 학생은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특정 종교행사 참여와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 실태

- 종교 대체 과목 수강금지 항목이 있는 학교가 있음
- 흡연 시, 징계사면이나 해제 시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 학부모에게까지 사유서를 요구하는 학교가 있음
- 종교, 사상의 자유를 언급한 좋은 사례도 있음

★ 의견

- 종교과목이 있으면 대체과목을 마련해야 함
- 강제적 반성문, 서약 진술 강요는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임
- 교사 개인에 의한 종교 강요는 금지되어야 함
- 종교, 사상의 자유를 모두 명시하여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야 함

★ 예시

제○○조 (양심·종교의 자유) (전주○○고)

- ① 학생은 세계관·인생관 또는 가치적·윤리적 판단등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갖는다.
- ② 학생은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 서약 등 진술을 강요받지 않는다.
- ③ 학생은 특정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받지 않는다.

8 이성교제

순	살펴 볼 내용
1	임신, 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5(2%)	204(98%)
고등학교	133	3(2%)	130(98%)

순	살펴 볼 내용
2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문란 시 퇴학 가능, 이성교제로 인해 학교의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이성 간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 가능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35(17%)	174(83%)
고등학교	133	18(14%)	115(86%)

★ 실태

- 이성교제를 금지하는 학교가 있음
-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 가능한 규정이 있는 학교가 있음
- 신체접촉의 예시가 제시된 학교가 있음
- 순결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학교가 있음
- 개방된 장소에서 교제해야 한다는 학교가 다수임
- 불건전한 이성·동성교제, 풍기문란에 관한 행동에 대해서 징계 규정이 다른 경우가 있음

★ 의견

- 학적을 유지하고, 미혼모 위탁시설의 위탁교육 안내
- 이성교제에 관한 교육이 우선시 되도록 해야 함
- 순결교육(성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항목) 삭제가 필요함
- ‘개방된 장소’와 이성교제로 인한 징계가 삭제되어야 함

※ 학생인권보호 및 학교규칙 제·개정(교육부 학생복지자치과 -2876, 2014.5.15.)

- 임신·출산, 이성교제 등을 이유로 퇴학, 전학, 자퇴 권고 등 학습권 침해를 유발하는 학칙* 개정
(*불건전한 이성교제로 풍기문란 시 퇴학 가능, 이성 교제로 인해 학교의 교육 분위기를 저해하거나 이성 간 신체접촉을 할 경우 징계 가능 등)
- 시·도교육청은 학교별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안내하고, 교육청 단위 ‘학교 규칙 컨설팅’을 통한 점검 병행 실시

★ 예시

제○○조 (이성교제)

- ⑧ 다른 학생과 교제 시 제삼자에게 불쾌감이나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
- ⑨ 성(性)에 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9

학생 자치활동

순	살펴 볼 내용
1	학생회 임원 입후보시, 징계여부, 성적, 학년, 품행에 따라 제한을 두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미공개 학교 수
중학교	209	83(40%)	126(60%)
고등학교	133	43(32%)	90(78%)

순	살펴 볼 내용
2	학생투표가 아닌 교사 등이 임원을 임명하거나 추천한다(학생의 추천 20명 이상)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10(5%)	199(95%)
고등학교	133	12(9%)	121(91%)

순	살펴 볼 내용
3	학급 임원 및 학생회 임원이 직무 수행 중 징계를 받을 시에 자격이 박탈된다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31(15%)	178(85%)
고등학교	133	23(17%)	110(83%)

★ 관련 근거

「초·중등교육법」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보호되며, 그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0조 (학생자치활동의 보장)

학교의 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학생의 자치활동을 권장·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8조(자치활동의 권리)

- ① 동아리, 학생회 그 밖에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의 자치 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생자치조직의 구성과 운영 등 학생자치활동의 자율과 독립을 보장하고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③ 학교는 성적, 징계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학생자치조직의 구성원 자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 ④ 학생자치조직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 ⓐ 학생자치활동에 필요한 예산과 공간, 비품을 제공 받을 권리
 - ⓑ 학교운영, 학교 규칙 등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할 권리
 - ⓒ 학생자치조직이 주관하는 행사를 자유롭게 개최할 수 있는 권리

제19조(학칙 등 학교 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칙 등 학교 규정(이하 ‘학교규정’이라 한다)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학교규정의 제·개정 과정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 수렴하여야 하며,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의 의견 제출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여 학교규정을 제·개정하고, 이를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0조(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 ① 학생은 학교 운영과 교육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회 등 학생자치기구와 학생들의 자발적 결사는 학생의 권리와 관련 있는 사항에 의견을 표명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교의 장과 교직원은 학생대표와의 면담 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의견을 청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학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 실태

- 타의 모범, 출석률 90%이상, 징계 전력이 없는 학생만 입후보 가능
- 학생회 의결사항은 학교장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
- 학교정책 결정 권리 모범적이고, 교내회합이 허가된 학교가 있음
- 교사5인, 학생 50명 추천서는 지나친 조항임. 별도의 교사지도위원회 통하여 지나친 개입
- 학생회 운영규정을 학교생활규정이 아닌 별도로 운영하는 학교가 있음
-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단체 활동 금지 조항이 있음
- 교내 회합(학생회 회의 소집 등)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가 있음
- 교내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학생은 학생회원 자격 박탈한다는 학교가 있음

★ 의견

- 자치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간접을 배제하도록 개정해야 함
- 입후보자의 평가 주체는 학생들이므로 학생 스스로 후보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함

- 학생자치조직의 대표는 보통, 평등, 비밀,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되도록 해야 함
- 출석정지 이상의 중징계일 경우 등으로 제한을 주도록
- 과거 징계 기록으로 입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부당함
- 학생회 의결사항은 최대한 존중해 주도록 하고, 필요하면 학교장과 협의할 수 있음
- 학생회-학교장과의 정기적인 간담회 개최가 필요함

★ 예시

제○○조 (자치활동)

-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 ②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 ③ 학생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적절한 예산을 지원 받는다.
- ⑥ 자치활동의 조직 및 기능에 관련한 사항은 ‘학생회 회칙’에 따른다.
- ⑦ 학생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존중)한다.

9

양성평등

순	살펴 볼 내용
1	생리공결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가?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5조(건강에 관한 권리)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결석하거나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공결로 처리하는 등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 분석 결과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23(11%)	186(89%)
고등학교	133	8(6%)	125(94%)

★ 실태

- 생리공결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는 학교가 중학교 89%, 고등학교 94%임
- 생활기록부 예시(출결사항)에 공결로 처리하도록 제시

★ 의견

- 규정이 없는 학교에 규정을 제정하도록 안내함
- 양성평등이나 학생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생리결 조항을 삽입하여 학생들의 권리 를 보장

★ 예시

제○○조 (건강에 관한 권리)

- ① 학생은 최적의 건강상태를 유지하고, 아플 때 적정한 치료를 받고 보건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교의 장은 여학생이 생리로 인하여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 생리 중인 여학생에 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보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표현의 자유

순	살펴 볼 내용
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24(11%)	185(89%)
고등학교	133	18(14%)	115(86%)

순	살펴 볼 내용
2	교내 집회를 금지하거나 했을 경우 징계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38(18%)	171(82%)
고등학교	133	18(14%)	115(86%)

순	살펴 볼 내용
3	학교 게시판(학교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사용할 시에 허가를 받아야 하거나 통제를 받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6(3%)	203(97%)
고등학교	133	36(27%)	97(73%)

★ 관련 근거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17조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은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은 서명이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모을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 단, 학교의 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 조례 제19조제2항에 정한 절차를 거쳐 정하는 학교의 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하여 제한할 수 있다.
- ④ 학생은 학교 안팎에서 모임이나 단체 활동 등에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⑤ 학교의 장은 교지 등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필요한 시설과 행·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실태

- 교내 회합, 외부 참가 허가 조항이 있는 학교가 있음
- 모든 집회와 결사는 학교장 허락 필요한 경우가 다수임
- 게시판에 게시할 때 학교장 승인이 필요한 경우가 있음
- 불법집회, 불온문서 등의 벌점, 징계 규정으로 규제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의견

- 서명, 집회 및 결사의 자유 등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의 내용을 삽입하여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하도록 규정 개정을 해야 함
- 작품 출품 및 허가 조항 등 최소한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함
- 불법집회, 불온문서 등의 벌점, 징계규정 삭제가 필요함

★ 예시

제○○조 (의사 표현의 자유)

- ① 학생의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당하여서는 안 된다.
- ③ 학생은 학교로부터 교지 및 학생 언론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고, 필요한 시설 및 행·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11

노동권 인정 여부

순	살펴 볼 내용
1	아르바이트를 금지하는 규정이나 교사들의 허가가 필요한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4(2%)	205(98%)
고등학교	133	2(1%)	131(99%)

★ 실태

- 만 15세 이상 부모동의 하에 아르바이트 가능
- 직업교육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임에도 학생들의 노동인권 보장 규정이 없고 침해하는 학교가 있음
- 경제적이나 기능 연마인 경우 부모님, 담임교사, 학생부의 허락하에 실시

★ 의견

-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적극적인 노동인권교육 강화
- 금지 규정 등은 삭제해야 함

* 전라북도교육청 노동인권교육 자료 제작 (인성건강과-18887, 2015.7.14.)

청소년이 알아야 할 노동권리' (전북학교 소식 앱)

너 그거 아니?(01 최저임금 ~ 11 알바십계명) 청소년 노동인권 Q&A(01~16)

학생인권교육센터 홈페이지(<http://human.jbe.go.kr>) 인권자료 탐색

12

징계 · 상벌 규정

순	살펴 볼 내용
1	상벌점제(그린 마일리지 제)를 시행하고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시행 학교 수	미시행 학교 수
중학교	209	67(32%)	142(68%)
고등학교	133	63(47%)	70(53%)

순	살펴 볼 내용
2	징계사유에 불합리한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85(40%)	124(50%)
고등학교	133	50(38%)	83(62%)

순	살펴 볼 내용
3	징계와 상별 절차에서의 문제가 있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99(47%)	110(53%)
고등학교	133	40(30%)	93(70%)

순	살펴 볼 내용
4	징계 처분을 함에 있어 사유의 경중에 따라 징계의 종류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140(67%)	69(33%)
고등학교	133	85(64%)	48(36%)

순	살펴 볼 내용
5	상별점 제도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40(19%)	169(81%)
고등학교	133	40(30%)	93(70%)

순	살펴 볼 내용
6	징계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으로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규정이 있는가?

학교 급	전체학교 수	규정이 있는 학교 수	규정이 없는 학교 수
중학교	209	97(46%)	112(54%)
고등학교	133	78(59%)	55(41%)

★ 관련근거

초·중등 교육법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26조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 내용을 공고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벌점제를 포함한 학생에 대한 지도 방법과 절차에서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 ①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의 인권 침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에게 상담과 조사 등을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 ②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모든 학생의 인권 관련 사항에 대하여 관계 기관에 문서 등으로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 ③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의 청구권과 청원권 행사에 비밀을 보장받으며, 그 행사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 ④ 인권옹호관 및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청구와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지며, 그 처리 결과를 청원한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실태

- 상벌점제를 운영하는 학교가 중학교 31%, 고등학교 47%임
-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학교들이 있음

- 중학교에 퇴학처분 규정이 있는 학교가 있어 삭제해야함
- 재심청구권이 학교장에 있는 경우가 다수 있음
- 징계기준이 없는 경우도 있음
- 가중처벌의 내용이 있는 학교가 있음
 - 자치법정으로 학생의 징계를 주는 학교가 있음
- 상·별점제 및 징계에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용어가 있음

학교생활 규정에서 자주 사용되는 자의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단어들

학생에 본분에 어긋나지 않는 행동과 용의 복장, 학생신분, 불량, 품행불량, 남녀 간 파렴치한 행위, 학생답지 못한 행동, 교사의 지도에 불손한 태도, 교내외 불량한 이성교제, 기초생활습관 불량, 가망이 없다, 선동, 학생다운, 불순, 불온, 개전의 가망 없는, 파렴치한, 학생을 선동하여 질서를 문란, 교육질서를 어지럽힐 목적으로, 동맹휴학을 주동, 불건전, 불미스러운, 불온서적, 여성다운, 불순세력, 백지동맹을 주동 또는 선동, 학생으로서 품위, 불법집회, 불량서클, 신분에 어긋남 없이, 집단행동, 불량목적, 집단 폭행 및 패싸움을 선동하거나, 언행이 거칠거나 불손한 학생, 수업태도가 불량하고, 신발은 검소하고 학생신분에 맞는, 학생신분에 맞는 단정한 머리형, 고사에 불응할 것을 선동한 자, 무절제하고 불건전한 휴대폰 사용, 학교장의 허가 없이 불순한 외부행사에 출연, 학생다운 양말 및 스타킹, 불건전한 문화를 제거함, 패딩 허용(학생다운 색상)

★ 의견

- 상별점제는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함(경기도는 폐지되었고, 전라북도는 2016년도 상별점제 시스템이 폐지될 예정임)
- 징계의 원칙과 절차 및 구제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에 명시하도록 안내하고 삽입하도록 해야 함
- 실태에서 분석된 자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용어를 정리하여 학교에 안내하고 시정하도록 해야 함
- 학생 징계 시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시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음
- 학교의 장은 징계 관련 절차에서 해당 학생을 처벌하는 것에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및 보호자 등과 협력하여 해당 학생의 온전한 회복과 복귀를 위하여 노력해야 함
- 학교폭력이 아닌 학생 징계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시정이 필요함
- 중학교 퇴학처분과 가중처벌의 내용은 삭제가 필요함

★ 예시

제〇〇조 (징계의 원칙)

- ① 학생의 징계는 징계사유에 대한 사전 통지, 공정한 심의기구의 구성, 소명의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 재심요청권의 보장 등 적법절차를 준수한다.
- ② 징계와 그 전후의 절차에서 징계대상 학생의 회복과 복귀를 목표로 하고, 그것을 위하여 지역사회, 보호자 등과 협력한다.
- ③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격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그 사유의 경종에 따라 징계를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④ 학교의 장은 징계를 할 때에는 학생의 보호자와 학생의 지도에 관하여 상담할 수 있다.
- ⑤ 징계 대상 학생의 신상정보를 노출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〇〇조 (징계의 종류와 기간) 징계의 종류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내 봉사 : 0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2. 사회봉사 : 0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3. 특별교육이수 : 0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단결석으로 처리한다.
5. 퇴학처분 : 본교에서 퇴학시키는 것을 말한다.
6. 훈계·훈육, 교실에서 분리조치, 상담지도,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아니하고, 학생지도의 한 방법으로 한다.

제〇〇조 (징계의 방법)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항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1. 학교내 봉사 : 해당 학생은 등교할 수 있으나 일정한 제약을 받을 수 있으며 생활교육 담당부서나 해당 학년 교사 등의 지도를 받으며 봉사활동(교내 환경 미화, 교재·교구정비, 학교 인성교육프로그램, 기타 적절한 활동 등)을 하여야 한다.
2. 사회봉사 : 해당 학생은 지역 행정기관, 공공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에서 일정한 시간동안 사회봉사활동을 하여야 한다. 사회봉사기관으로부터 대상 학생의 불참 및 이탈 통보가 있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3. 특별교육이수 : 해당 학생은 전라북도 교육감이 설치·지정·위탁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및 상담·치료를 받아야 한다. 교육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사고결석으로 처리하여 가중 처벌한다.
4. 출석정지 : 해당 학생은 가정학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모님의 보호·감독이 어려울 경우 학교 상담실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출석정지 기간은 무단결석으로 처리하되, 학교생활기록부의 특기 사항란에 사유는 기재하지 않는다.
5. 퇴학처분 : 징계의 최종 단계로 퇴학처분을 시킬 수 있다. 학교장은 퇴학처분을 할 때에는 일정기간 동안 ‘가정학습’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학생 및 보호자와 진로상담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다른 학교 또는 직업교육훈련기관 등을 알선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〇〇조 (징계통보 및 진술권 보장)

- ① 학년 및 학교 생활교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는 징계 사안 심의 전에 간사의 사안 설명 및 해당 학생의 학교생활·품성·가정환경 등에 대한 의견을 담임교사(또는 상담교사)로부터 청취한다.
- ②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의 의견 진술을 듣는다.

③ 각 위원회는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위원회 개최’, ‘의견진술(소명) 기회 보장’, ‘대리인 선임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유선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유선 통화일시, 내용의 기록 또는 서면 통보 사본을 보관한다)

제○○조 (심의 확정 및 재심 요구)

① 학교장은 각 위원회의 해당 학생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과 학생 또는 보호자의 진술내용을 검토하여 교육적인 차원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를 최종 결정한다.

② 각 위원회에서 징계 및 징계 종류가 결정되면, 이를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보호자에게 학생 선도에 협조할 것을 요청한다.

③ 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학생, 또는 보호자는 3일 이내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학교장은 재심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 여부를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학교장은 각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거나 전체직원회의에 회부하여 심의·확정할 수 있다.

제○○조 (퇴학처분에 대한 징계 재심 청구)

① 학교위원회의 징계 처분 중 퇴학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그 조치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생징계조정위원회’에 그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② 학생 또는 보호자가 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2. 피청구인
3. 퇴학조치가 있음을 안 날
4. 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③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청구사항을 지정 서식에 작성하여 관련 자료와 함께 담당부서를 방문하여 접수한다.

제○○조 (징계의 유보, 경감, 해제, 가중 등)

① 징계 중의 학생이라도 각종 시험에 응시하게 하되, 시험 참여기간은 징계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학교장은 징계 완료 전이라도 개전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의 경감 및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③ 징계 중에 있는 학생이 징계사안이 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가중 처벌할 수 있다.

제○○조(사후 조치)

① 담임교사와 상담교사는 징계가 종료된 학생을 수시로 관찰·지도하고, 지도 내용 및 결과를 기록·보존한다.

②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중학교의 전학 등)와 동령 제89조(고등학교의 전학 등)에 의거하여 전학 또는 재입학이나 편입학 할 수 있다.

제○○조 (징계의 기준)

학교생활규정 재·개정 방향이 제시한 관련 근거 법령에 위반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각 학교에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19조 2항의 절차를 거쳐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13 종합의견

-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는 교육공동체 모두에게 적용되는 최소한의 기준이며 인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준거이므로, 반드시 학생인권조례에 준하여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해야 함
-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문제점으로 드러난 항목 및 방향에 대한 학교 컨설팅을 실시하고, 지역교육지원청 및 도교육청 해당부서를 통해 지속적인 확인과 안내가 필요함
- 학교생활규정 개정은 규정개정심의위원회에 의한 구성원의 충분한 협의와 서로의 의견이 존중되는 민주적인 학교 문화 조성이 선행되어야 함
- 학교규칙(출석, 시상 등), 학교폭력에 관한 규정은 별도의 규정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학생회의 규정은 삽입해야 함
- 금지(부정적인)의 규정보다 권리보장을 하는 규정 개정이 되어야 함
- 학교생활규정은 인성인권 담당 교사만의 몫이 아니므로, 전체 구성원이 함께 논의 할 수 있도록 접근을 해야 함
- 선도부 상벌점제에 대한 개선을 위해 학교별로 공동체 간 협의를 통해 고민하는 시간이 필요함
- 두발 및 용모에 대한 학생의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보장되어야 함
- 기존에 제시된 학교생활규정을 그대로 인용하기 보다는 학교의 특색, 지역, 실정에 맞고 학생인권조례에 준하여 개정을 해야 함
- 학생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했다고 해도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는 규정이 있다면 반드시 개정해야 하며, 학생들에게도 교육을 해야 함
- 인권은 규정의 문제를 넘어서 기본권이므로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감수성을 키우는 정책 및 인권교육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실천하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음
- 인권과 학교 자치는 학교 내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토대가 될 것이며 민주시민의 자질을 갖추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므로, 학생자치활동에 대한 규정의 보완과 구체적 실천(학생자치활동 시간 확보, 학생회실 확보, 학생회 예산확보, 자치활동의 적극적인 지원 등)이 필요함